

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0-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쇠퇴 방지를 위하여 안산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평가단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- 평가의 실시 및 평가단의 지원,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2】

다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라.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6. 6. 2. ~ 2026. 6. 22. (20일간)

마.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사후관리계획”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·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1.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
2. 도시쇠퇴 방지 대책
3.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
4.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
5.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·정비 지원 사업
2.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·관리 지원 사업
3.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
4.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
5.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평가단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

2.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3.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

4.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,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평가의 실시) 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,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이후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.

제9조(평가단의 지원) ① 시장은 「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 지급) 평가단 조사·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,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도시주택국
입 안 자	도시개발과장	강 신 우
	재생정책팀장	김 동 욱
	담 당 자 (연락처)	서 진 (481-2734)

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0-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8월 31일
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☐ 수정이유

- 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관한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☐ “도시재생” 을 “도시재생사업” 으로 수정함.(안 제2조제2호)

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도시재생”을 “도시재생사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**수정안**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사후관리계획”이란 <u>도시재생</u>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·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제정안과 같음) 2. ----- <u>도시재생</u> <u>사업</u> ----- -----.